## KOSHA GUIDE

C - 76 - 2013

- (나) "흙막이 벽"이란 지반굴착 시 붕괴 및 인접지반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 (다) "가이드 파일(Guide Pile)"이란 말뚝 타입시 항타작업에 앞서 양측에 설치하는 H 형강 말뚝으로서, 정확한 정밀도로 말뚝의 위치 결정을 위해가이드 범이 설치되며 이 때 가이드 범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입한 가설말뚝을 가이드 파일이라 한다. 가이드 파일에 걸리는 하중은 작기 때문에밑둥 묻힘 깊이도 적고 대개가 마찰 말뚝이다. 가이드 범이 이동되지 않도록, 와이어 로프나 앵글재로 가이드 파일 사이에 브레이싱이 주로 이용된다.
- (라) "지수재"란 말뚝의 지수를 목적으로 하는 수팽창성 지수재로서 말뚝의 플랜지 부위에 도장되며 말뚝 설치후 물과 접촉하여 24시간이후에 약 10-20배정도로 팽창하여 플랜지 부위의 공극을 충진시켜 지수효과를 발휘한다.
- (2)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 전보건규칙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 강널말뚝 흙막이공사 시공전 안전조치 사항

- (1) 지반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기준틀 설치, 강널말뚝 항타방법, 항타장비의 선정, 지반보강 등 상세시공방법을 사전에 결정한다.
- (2) 산업안전보건 규칙 「제 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및「제 39조 작업지휘자의 조정」에 따라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감독자(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야한다.
- (3) 작업계획서를 활용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필요 장소에 안전표지 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